

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 입지 공개모집 때 약속한 입지 결정지역 구미시 산동면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(안 제2조 및 제3조)
 - 기금은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
 - 존속기한은 면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함
- 기금의 용도 (안 제4조)
 - 면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, 면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, 면 발전협의회의 운영비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
- 기금의 운용·관리 (안 제5조)
 - 면 발전협의회에 위탁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(안 제6조)
 -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「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에서 대행함

-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명,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 해당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의원 2명과 면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

○ 위원회의 기능 (안 제7조)

- 기금운용계획(변경)안 및 결산보고서안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,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

3. 참고사항

- 구미시 공고 제2004-616호(2004.12.21) :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공개모집 때 공고한 사항으로 유치면에 지원 약속된 사항임

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면(이하 “면”이라 한다)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유치 면발전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미시의 출연금
2.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면 지원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소멸된다.

② 제1항의 지원사업이란 기금전출을 위하여 면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된 사업을 말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.

1. 면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
 2. 면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
 3. 면발전협의회 운영비(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이내)
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-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는 면발전협의회로 위탁한다.

③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유치 면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「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에서 대행한다. 다만,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명,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 해당 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의원 2명과 면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(변경)안 및 결산보고서안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

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) 시장은 기금이 제4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.

제12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,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 고 자 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2항의 재산의 보호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시행령 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

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□ 타 시·군 비교 사례

구 분	지원 대상	출연금	지원 연도	운영 주체	지원금 용도
충 북 청주시	해당 마을 (120 세대)	59억	2007년	주민지원 협 의 체	-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-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-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
구미시	유 치 면 (1,801 세대)	100억	2008 ~ 2010	면 발 전 협 의 회	- 면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- 면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- 면발전협의회의 운영비